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53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김기현・박성훈・김정재

최은석 · 강승규 · 이종욱

강명구 · 강대식 · 박성민

김 건 · 김대식 · 정동만

김미애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상반기 초·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.

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.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,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 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,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·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.

실제로, 각 시·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'질환교원심의위원회'는

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, 부산·경기·충북·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유명무실한 '질환교원심의위원회'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,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2(복직 등)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,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은 각 시·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하여야 하며, 그 결정에 따라 복직 또는 근무 중인 교원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  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직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질환교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·심사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의2(복직 등)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 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 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복직 명령에 도 불구하고,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
	복직은 각 시·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 한다.  ④ 제3항에 따른 질환교원심의 위원회는 학교장의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
	우 심의하여야 하며, 그 결정에 따라 복직 또는 근무 중인 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

한·심사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